

회의진행순서

- 일 시 : 2021. 6. 16. (수) 14시
- 장 소 : 온라인 영상회의
- 심의 안건

**<안건1> 등기부, 토지대장 등 공시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공개여부**

<안건2> 공무원의 개인정보 관련 공개범위

<안건1>

등기부, 토지대장 등 공시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공개여부

I 기록개요

- 생산부서(업무): 토지,법인과 관련된 모든 업무(도시계획,보상,건설,법인설립 등)의 처리과정에서 기초 증빙자료로 첨부
- 생산시기: 보유기록 전 시기(1920년대 이후)
- 분량: 개별 건으로 등록되지 않고 관련 문서의 첨부자료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정확한 건수는 확인이 어려우나 수만건 이상으로 파악됨
- 주요 기록 및 포함 정보

주요기록	포함 정보	관련 법령	열람발급기관
부동산 등기부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제부: 당해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소재,지번,지목,면적,건축물 구조,종류 등) ▶ 갑구: 소유권에 대한 사항 ▶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전세권,저당권 등) 관련 사항 ▶ 갑구,을구에는 <u>권리자 정보(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전체/일부) 및 등기목적,원인,날짜,금액 등의 정보 포함</u> 	부동산등기법 제19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법원 (등기소)
지적공부 부동산종합 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공부: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지적도·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 부동산종합공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저장한 것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제76조의4(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증명서 발급)	지적소관청 (시군구)

	▣ <u>소유자 정보(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전체/일부) 포함</u>		
법인 등기부등본	상호, 목적, 사무소, 설립허가 연월일, <u>원</u> 의 성명,주소 등	상업등기법 제15조(등기사항 의 열람과 증명)	법원 (등기소)

- **특 징:** 일반적으로 비공개 대상인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나, 부동산 거래 및 법인의 법률관계의 안전성을 위해 각각의 근거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의해 등록사항을 일반에 열람 및 발급토록 하고 있음

2

공개검토

□ 관련 규정

○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제6호(개인정보) 및 예외사항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검토 사안

- 자료 유형별 근거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통해 열람·발급하는 것이 아닌, 다른 문서에 첨부자료로 편철되어 있는 등기부,토지대장 등 공시자료의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예외적 공개가능 개인정보 조항을 적용하여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공개할 것인지 여부

☞ **검토의견** : 부동산(법인)에 관한 정보 및 권리관계를 공시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법인) 등기 및 지적·부동산종합공부에 포함된 일부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 여기에 포함된 성명,주소,생년월일,성별 등의 정보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식별정보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정보이므로, 개별 근거 법령에 규정된 절차 외의 방법을 통해(정보공개청구) 제공하는 경우는 공개범위를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법령에 규정된 절차가 아닌) 정보공개방식으로 문서에 첨부된 등기부 등 공시자료를 포함하여 공개가능한지 여부

☞ **검토의견** : 정보공개법에서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제2조 제1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므로(제9조 제1항), 등기부 등 공시자료가 문서에 첨부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도 정보공개 대상 정보에 포함되며,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해당여부를 살펴 결정하여야 할 것임.

<참고>

서울기록원은 구토지대장 등 지적공부 일부를 보유하고 있으나, 지적공부 자체(지번별)의 열람,발급,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되는 경우, 정보공개절차로 처리하지 않고 청구인(민원인)에게 공간정보법에 따른 절차(지적소관청인 자치구에 신청)를 안내하고 종결처리함.

※ 정보공개법 제4조(적용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검토 결과

○ **첨부된 부동산공시자료의 공개범위: 30년 미경과 기록**

- **부분공개**

- **비공개대상정보 및 사유**

- ▶ 부동산등기부, 지적공부, 부동산종합공부 내 권리자(소유자등)인 개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전체/일부)은 핵심적인 개인식별정보로서 비공개함(6호)
- ▶ 부동산등기부, 지적공부, 부동산종합공부 내 권리자(소유자등)인 법인등단체의 성명,주소,등록번호는 공개시 법인들의 재산내역이 공개되어 법인등의 경영·영업상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함(7호)
- ▶ 그밖의 부동산의 표시, 권리변동 사유, 금액, 가격, 이용정보 등의 정보는 그 자체로 개인정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공개함

○ **첨부된 부동산공시자료의 공개범위: 30년 경과 기록**

- **부분공개**

- **비공개대상정보 및 사유**

- ▶ 부동산등기부, 지적공부, 부동산종합공부 내 권리자(소유자등)인 개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전체/일부) 등은 핵심적인 개인식별정보로 기능하므로 30년 경과 후에도 전체를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나, 생산후 30년이 경과한 경우 성명 등 일부의 개인정보만 공개하는 경우 그 자체로 개인을 식별,유추하는 것이 어려우며, 해당정보는 이미 공시된 정보이기도 하므로, 일부의 개인정보를 공개한다고 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는 크지 않다고 판단됨.

다만, 등기부등본 등의 자료는 그 자체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사안(업무)을 처리하는 문서의 첨부자료로서 한건으로 편철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기록물 본문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개인의 성명을 비공개처리하는데 첨부자료를 통해 개인이 식별되면 본문의 개인정보 보호 취지가 무용해질 것이므로, 등기부 등의 자료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기록물에서의 공개기준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서울기록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권 관련 기록의 경우(토지조서 등) 생산 30년 경과시 소유자의 성명의 성(姓) 및 주소 중 시군구 정보는 공개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공시자료가 첨부된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권리자의 성명 중 성(姓) 및 주소 중 시군구 정보를 공개하고 나머지 개인정보는 비공개(6호))

<참고> 2020년 제2차 기록물공개심의회 심의결과

[안건2] 30년 경과 재산권 관련 기록의 경우 성명의 성(姓) 및 주소 일부(시군구) 공개

- ▶ 30년이 경과한 기록의 경우, 부동산등기부, 지적공부, 부동산종합공부 내 권리자(소유자등)인 법인등의 정보(명칭,주소,등록번호)가 공개된다고 하여 법인등의 경영·영업상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공개가능할 것임

○ 첨부된 법인등기자료의 공개범위

- 부분공개

- 비공개대상정보 및 사유

- ▶ 임원의 성명은 등기를 통해 공시된 정보일 뿐 아니라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공개되고 있는 정보로서 공개한다고 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공개가능할 것임.

다만, 임원의 주소는 성명과 결합하여 핵심적인 개인식별정보로서 기능하고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비공개함이 타당할 것임.

또한 30년이 경과하여도 법인등기부 열람이라는 규정된 절차 외의 방법으로 임원 개인의 주소를 공개할 실익이 공개시 침해되는 이익보다 크지 않으므로 비공개함.(6호)

그밖의 법인에 대한 정보는 이미 공시된 정보로서 공개가능할 것임.

<안건2>

공무원의 개인정보 관련 공개범위

1 기록개요

- 생산부서 : 인사부서, 감사부서, 국/사업소 주무부서 등
- 생산시기 : 1950년대 이후
- 주요 기록 및 포함 정보
 - 주요 기록: 인사기록카드, 인사발령문서, 임용·휴직·퇴직 등 관련 문서
 - 포함 정보: 공무원 성명, 직위, 직급, 호봉, 급여, 휴직·퇴직·면직 등 사유, 이력 등

2 공개검토

- 공무원의 개인정보 관련 생산단계에서의 공개 현황 및 기준
(서울시 정보공개매뉴얼)

공개대상		비공개대상	
공개정보	근거	비공개정보	사유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소속,직위	정보공개법 제9호제1항 제6호 라목	휴대전화번호(개인용) 자택주소 개인 이메일주소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수행하는 업무의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적 접촉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공문서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의 직위나 직급, 서명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가족관계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

공무원의 전자우편 주소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로, 공개 시 개인 및 가족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권리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복무관련 정보 및 업무분장 휴가일자, 직무수행 관련 휴가사유	직무수행과 무관한 정보는 비공개	퇴출후보자 명단 개인의 징계내역	공개 시 개인의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개인의 사회적 활동 제한 등 사회적 활동에 관한 기회를 제약당할 우려가 있음
출장신청 및 결과보고서 출장여비 수령내역	대전지법 2005구합 1536 서행심 2015-349 중앙행심 2013-12347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학력 및 경력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인사기록카드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음
		범죄사실 기록 납세내역 재산 및 채무내역 급여 및 수당내역 복지포인트 및 사용내역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개인사유로 인한 휴가·휴직 사유 및 휴가지 등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서 공개 시 개인의 사회적 활동에 위협을 줄 가능성, 명예훼손,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검토사안

- 공무원 개인정보의 공개범위와 관련하여 생산단계에서의 비공개 기준을 생산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할 것인지 여부

☞ 검토의견 : 개인정보의 범위에 포함되는 정보라고 할지라도 생산후 장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성격과 민감성, 직무와의 관련성 및 공개시 충족되는 알권리 등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 관련성이 있고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침해의 우려가 적은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여부를 재판단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특히, 건강, 질병, 가족관계, 범죄 등 특별히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외한 경미한 일부 개인정보의 경우는 생산 50년이 경과한 경우 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검토결과

○ 50년 경과시 공개가능한 공무원 개인정보

[호봉, 급여, 수당 정보] 공무원의 급여와 수당체계는 법령으로 공표된 정보로서 공무원 개인의 급여 액수도 일정범위 내에서 추측이 가능하며, 생산후 50년이 경과한 경우 정보의 민감성이 약화되며, 급여정보는 당시의 생활사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사료로서의 의미와 알권리의 차원에서 공개시 침해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자유의 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개가능하다고 판단됨

또한, 호봉정보는 과거에는 시보를 통해 인사 발령사항과 함께 공개해오던 정보로서 생산후 50년이 경과한 경우 다시 공개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

다만, 호봉·급여·수당 자체가 아닌 책정 근거가 되는 개인적인 사유 등의 정보가 포함된 경우 그 정보는 비공개함

[퇴직,면직,휴직 사유(근거조항)] 인사발령 공문에서 퇴직·면직·휴직의 근거(사유)조항 및 군입대 등의 사유는 시보를 통해 공개해오던 정보이기도 하며, 생산후 50년이 경과되는 경우 공개하여도 침해되는 이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공개가능할 것임.

다만,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사유가 포함된 경우 해당 정보는 비공개함

[사직서] 원에 의한 사직이며 사직서 내에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사직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인 표현(‘일신상의 사정으로’ 등)으로 이루어진 경우 생산 50년이 경과한 경우 공개가능할 것임.

<참고>

비공개 상한제도

▶ **개념** : 기록물 성격 별로 비공개 상한기간을 정하여 상한기간 경과 후에는 공개를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

▶ **국내의 제도 및 현황**

공공기록물법에 규정된 30년 공개 원칙에 의해 30년이 경과하면 모든 문서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지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은 30년 공개 원칙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비공개되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으로, 기록물 성격에 따라 비공개 상한기간을 달리 두어 상한기간 경과 후에는 공개를 보장하도록 하는 비공개 상한 규정을 도입하였지만, 구체적인 시행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로 적용되지 않고 있음

▶ **관련 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③ 비공개 기록물은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지나면 모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6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의 비공개 상한기간 지정)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의 성격별로 비공개 상한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해외의 제도 현황**

○ **프랑스**

비공개 대상 유형	상한기간
의료기록	125년
경찰조사기록, 재판 사건기록, 호적기록	75년
개인 사생활 정보 포함 기록	50년

○ **독일**

비공개 대상 유형	상한기간
자연인 관련 기록	사후 10년 / 생후 100년 / 기록물 생산후 60년
공무수행 중인 공직자와 현대사 인물이 포함된 기록물	보호기간 미적용

○ 영국

비공개 대상 유형	상한기간
제3자의 개인정보 기록	사망시점 또는 생후 100년

○ 일본

일반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정보	예시	상한기간
개인의 기밀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당해 개인의 권리의익을 부당히 침해할 수 있는 경우	학력, 직업경력 재산, 소득 채용, 임면 근무평점, 복무	30년 이상 50년 미만
개인의 중대한 기밀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당해 <u>개인의 권리의익</u> 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경우	국적, 인종, 민족 가족, 친족, 혼인 신앙, 사상 전염성의 질병, 신체의 장애 기타 건강상태	50년 이상 80년 미만
개인에 관한 <u>특히 중대한 기밀</u> 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당해 <u>개인 또는 유족의 권리의익</u> 을 부당히 침해하는 경우	가문 유전성의 질환, 정신장애 또는 기타 건강상태 범죄력	80년 이상

<출처>

문현숙(국가기록원), 「기록물의 적극적 공개를 위한 비공개 상한제도 도입 방안」, 2019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창조 교수), 「기록물 비공개 상한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 2007

2021년 제2차 기록물공개심의회 사전검토 의견서

※ 서울기록원 안검검토 의견과 상이한 부분은 파란색 표기

안 건 명	〈안건1〉 등기부,토지대장 등 공시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공개여부
검토의견	<p>○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시자료(등기부등본 등)가 첨부된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예외적 공개가능 개인정보 조항을 적용하여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공개할 것인지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위원) 공개 찬성 - (○○○ 위원) 등기부등본 등 자료의 경우 거래안전을 위해 제3자 누구라도 인터넷 발급을 통해서 갑그,을구 등 권리관계를 알 수 있음.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도 문제되지 않음. 따라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공개되지 않는 한 성명,주소,생년월일,성별 등의 정보는 공개가능하다고 판단됨 - (○○○ 위원) 다른 문서에 첨부된 등기부 및 토지대장 등의 경우 개인정보를 제한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음(부분공개) - (○○○ 위원) 첨부자료의 경우, 개인정보는 제한적 공개 <p>○ (법령에 규정된 절차가 아닌) 정보공개의 방식으로 문서에 첨부된 공시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위원) 첨부 공시자료도 공개 찬성 - (○○○ 위원) 등기부 등 공시자료가 문서에 첨부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도 정보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되며, 법 제9조 제1항 각호를 적용하여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 (○○○ 위원) 해당 정보에 대한 사안별 판단이 필요함

- (○○○ 위원) 공공기관의 보유,관리정보는 공개 대상이므로 첨부 공시자료도 공개 타당함

○ 첨부된 부동산 공시자료의 공개범위(30년 미경과 기록)

- 6호 관련(개인정보):
 - (○○○ 위원) 공개 찬성
 - (○○○ 위원)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공개되지 않는 한 사생활 비밀, 자유 침해하지 아니하여 공개 가능
 - (○○○ 위원) 부분공개(개인식별정보 제외)
 - (○○○ 위원) 핵심 개인식별정보 비공개
- 7호 관련(법인등의 영업·경영상 비밀):
 - (○○○ 위원) 공개 찬성
 - (○○○ 위원) 법인등의 경영·영업상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공개 가능할 것임
 - (○○○ 위원) 부분공개(개인식별정보 제외)
 - (○○○ 위원) 개인정보는 비공개, 그 외는 공개

○ 첨부된 부동산 공시자료의 공개범위(30년 경과 기록)

- 6호 관련(개인정보):
 - (○○○ 위원) 공개 찬성
 - (○○○ 위원)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공개되지 않는 한 사생활 비밀, 자유 침해하지 아니하여 공개 가능
 - (○○○ 위원) 부분공개(개인식별정보 제외)
 - (○○○ 위원) 부분공개, 일부 개인정보 공개 가능
- 7호 관련(법인등의 영업·경영상 비밀):
 - (○○○ 위원) 공개 찬성

	<p>(○○○ 위원) 법인등의 경영·영업상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공개 가능할 것임.</p> <p>(○○○ 위원) 부분공개(개인식별정보 제외)</p> <p>(○○○ 위원) 공개가능</p> <p>○ 첨부된 법인등기자료의 공개범위</p> <p>- 30년 미경과:</p> <p>(○○○ 위원) 공개 찬성</p> <p>(○○○ 위원) 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공개되지 않는 한 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 등기자료 정보는 사생활 비밀, 자유 침해하지 아니하여 공개 가능</p> <p>(○○○ 위원) 부분공개(개인식별정보 제외)</p> <p>(○○○ 위원) 부분공개, 임원성명 공개가능</p> <p>- 30년 경과:</p> <p>(○○○ 위원) 공개 찬성</p> <p>(○○○ 위원) 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공개되지 않는 한 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 등기자료 정보는 사생활 비밀, 자유 침해하지 아니하여 공개 가능</p> <p>(○○○ 위원) 부분공개(개인식별정보 제외)</p> <p>(○○○ 위원) 부분공개, 임원성명 공개가능</p> <p>○ 그 밖의 의견</p> <p>(○○○ 위원) 위 사례의 통계(빈도수 등)을 작성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p>
안 건 명	<안건2> 공무원의 개인정보 관련 공개범위
검토의견	○ 공무원 개인정보의 공개범위에 대해 생산단계에서의 비공개 기준을 생산후 30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일률적

으로 동일하게 적용할 것인지 여부

- (○○○ 위원) 다르게 적용 필요
- (○○○ 위원) 알권리 보호 측면상, 직무관련성 및 개인의 사생활 같은 민감정보에 대한 비공개 기준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 (○○○ 위원)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 추진, 단 이를 위한 서울기록원의 세부적인 지침 등이 요구됨
- (○○○ 위원) 민감한 개인정보 외 공개 가능

○ 생산 50년 경과된 기록에 대해 공무원 개인정보의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의견

- 호봉,급여,수당 정보 관련 : (모든 위원) 공개 찬성
- 퇴직,면직,휴직 사유(근거조항)관련:
 - (○○○ 위원) 공개 찬성
 - (○○○ 위원) 질병,건강 등 민감한 사생활 정보가 포함된 경우 해당 정보는 비공개함
 - (○○○ 위원) 부분공개
 - (○○○ 위원) 공개
- 사직서 관련:
 - (○○○ 위원) 공개 찬성
 - (○○○ 위원) 질병, 건강 등 민감한 사생활 사유가 포함된 경우 해당 정보는 비공개함
 - (○○○ 위원) 공개
 - (○○○ 위원) 공개

○ 그 밖의 의견

	<p>(○○○ 위원) 개인정보에 대한 ‘비공개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률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서울기록원 보유기록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인해 볼 필요도 있음</p>
--	--

2021년 제2차 기록물공개심의회 회의록

(공개용)

2021년 6월

행정국
(서울기록원)

2021년 제2차 기록물공개심의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21. 6. 16.(수) 14:00~15:30

◆ 장 소 : 온라인 영상회의

◆ 참 석 : 8명

- 위촉위원(4): 이상미(위원장), 김성순, 김희란, 박종연
- 내부위원(3): 김은실(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장),
원종관(보존서비스과장), 김현아(운영지원과장)
- 배 석 자(1): 서수련(간사)

◆ 안 건

- 〈안건1〉 등기부, 토지대장 등 공시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공개여부
- 〈안건2〉 공무원의 개인정보 관련 공개범위

◆ 회의결과

〈안건1〉 수정가결

- 주민등록번호 뒷6자리 제외하고 전부 공개(현재의 공시자료에서 제공하는 정보 전체 공개)

〈안건2〉 수정가결

- 30년 경과시 공개 가능한 공무원 개인정보
 - 호봉,급여,수당 정보
 - 퇴직,면직,휴직 발령의 근거조항
 - 사직서(일반적인 내용)

※ 질병,건강 등 민감한 사생활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

- 30년 공개 원칙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해당 개인정보의 성격과 민감성, 직무와의 관련성 및 공개시 충족되는 알권리 등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한 공개

□ 주요 발언 내용

▶ 개회

〈위원장〉

- 7명의 위원 모두가 참석하여 2021년 제2차 기록물공개심의회 개의됨.
- 안건 및 위원별 사전 검토의견에 대해 간사의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안건별로 의결하고, 마지막으로 의결사항을 작성한 의결서에 대해 위원 확인을 거치도록 하겠음. 회의 종료후 이메일을 통해 심의의결서의 위원별 서명을 받도록 하겠음

▶ 〈안건1: 등기부, 토지대장 등 공시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공개여부〉 심의

〈간사〉

- 안건 설명 ※ 붙임 안건 참고
- 위원별 사전 검토의견 보고 ※ 붙임 사전 검토의견서 참고

〈○○○ 위원〉

- 모두 공개가능하다고 봄. 등기부, 토지대장, 법인등기부 등이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또한, 서울기록원은 기록물관리기관이므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임.

〈○○○ 위원〉

- 주민번호 뒷6자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가능함

〈○○○ 위원〉

- 현행 등기부등본 등에서 제공하는 수준의 정보는 모두 공개

가능하다고 봄. 개인정보를 일일이 가려내는 것이 업무적으로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됨.

〈○○○ 위원〉

- 위원님들 의견에 동의함
- 사안별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통계, 데이터 축적이 필요함. 또한, 현재 정보소통광장에 공개가 될 때도 건별로 마킹을 해서 나가는 것 아닌지. 현재 정보소통광장에 공개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함.

〈간사〉

- 현재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에서는 부분공개 기록물의 경우 첨부물은 공개되지 않고 있음.

〈○○○ 위원〉

- 기록물 공개와 관련해서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온 것이 사실이나, 앞서 위원님들 설명을 들으니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비공개 해당사항이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이해가 되며, 주민번호 뒷자리 제외한 정도로 전체를 공개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여짐.

〈○○○ 위원〉

- 같은 의견임

〈간사〉

- 등기부등본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이미 공개된 정보이므로 그 자체는 공개하는 것에 문제는 없을 것임. 다만, 서울기록원에서 등기부등의 자료는 관련 사안을 처리하는 문서의 첨부자료로서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문서 본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의 이유로 보상대상자 등 개인의 성명 등을 제거하고 공개하는데, 첨부자료를 통해 개인이 식별되면 본문에서 가렸던 의미가 없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됨. 이에 대한 검토 요청드립니다.

〈○○○ 위원〉

- 본문에서 개인의 성명 등을 비공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사〉

- 개인의 재산내역, 보상금 등 개인의 재산 관련정보이므로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판단해왔음

〈○○○ 위원〉

- 그렇다면, 첨부물이라서 공개가 아니라 첨부물을 포함한 본문까지도 개인식별번호 일부를 제외하고는 공개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지

〈간사〉

- 좀 더 넓게 범위를 가려면 등기부 뿐만 아니라 본건 자체도 고민을 해서 공개 범위를 확장하는 식으로 기준을 같이 가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함

〈○○○ 위원〉

- 국가기록원에서도 지적아카이브가 있고 LX에서도 지적과 관련한 기록을 집중적으로 관리 및 공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유관기관의 공개기준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본문과 첨부물의 기준은 공개든 비공개든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위원〉

- 서울기록원에서 등기부등본 내의 개인정보를 비공개하더라도, 해당 지번에 대한 등기부 열람을 통해 얼마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간사〉

- 청구에 의한 공개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원문공개를 염두에 두고

있어서 개인정보 공개에 대해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한 면이 있음

〈○○○ 위원〉

- 이번 사안과 관련된 주된 기록들(토지,법인 등)이 원문공개 대상 기록들인지

〈간사〉

- 특정 토지의 권리관계 변동 자체에 대한 기록은 기본적으로 원문공개 대상으로 설정하지 않고 있음.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원문공개 실익이 크지 않고 혼란 야기 우려가 있다고 봄. 다만, 정책 문서인데 일부 재산권 관련 정보가 포함된 경우라면 원문공개 가치가 있다고 보임.
- LX등 유관기관 관련 사례는 좀 더 조사해보도록 하겠음. 국가기록원의 경우는 100년 가까이 경과한 토지조사사업 당시 기록은 토지소유자 성명,주소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 이후의 농지개혁 당시의 기록에서는 개인정보는 거의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런 식의 생산후 장기간 경과한 기록에서의 개인정보의 공개기준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현재로는 첨부 등기부등본 등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본문과 같은 기준으로 공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위원장〉

- 안건1에 대해 의결을 하겠음. 등기부, 토지대장 등의 공시자료에 대해 주민번호 뒷6자리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시는지

〈간사〉

- 특히, 30년 미경과 기록의 경우 현재 정보공개 세부기준에서 보상대상자 정보는 공개대상 정보가 아닌데, 첨부자료를 통해 모두 공개되어도 괜찮은 것인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 위원〉

- 이번에 LH사건이 밝혀진 게 특별한 방법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업지의 대상 토지목록에 대해 등기부 발급으로 밝혀낸 것임. 구토지대장, 폐쇄토지대장 등의 자료도 용지료만 내면 얼마든지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임.
- 해당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만한 정보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음
- 첨부 뿐 아니라 본문에서 대상자 성명 등을 가리는 것도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것인지 의문임. 내밀한 사생활 영역이 아니며 행정업무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일부 포함된 것일 뿐임.

〈○○○ 위원〉

- 다른데서 구할 수 없는 정보도 아니므로, 최대한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여짐.

〈○○○ 위원〉

- 법리적 문제 뿐 아니라 실무적 영향이 있으므로 기록원의 사전 의견과 위원회의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것 같음. 위원회이므로 위원회에서 나오는 결론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음
- 실제 적용시에 또다른 문제나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그때 다시 토론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위원〉

- 적용 시점 등은 단계적으로 검토해도 될 것임

〈위원장〉

- 첫 번째 안건 의결하겠음. 등기부 등 공시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공개범위에 대해 수정가결함. 동의하시는지(일동 동의)
- 주민등록번호 뒷6자리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함
- 심의 의결서 작성 확인

일련 번호	심의안건	검토의견	의결내용
2021- 2-1	등기부, 토지대장 등 공시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공개여부	○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제외 하고 전부 공개	수정가결

〈○○○ 위원〉

- 이번 결정을 적용하면 일일이 마스킹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오히려 업무량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됨.
- 정보공개 결과에 대해 일일이 소송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며, 그런 경우 등기부등에 포함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경우 서울기록원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음. 생각보다 행정법원에서 공개범위를 넓게 적용함.

▶ 〈안건2: 공무원의 개인정보 관련 공개범위〉 심의

〈간사〉

- 안건 설명 ※ 붙임 안건 참고
- 위원별 사전 검토의견 보고 ※ 붙임 사전 검토의견서 참고

〈○○○ 위원〉

- 쟁점이 두가지로 보임. 30년이라는 기준과 그 이상의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여 달리 취급할 것이냐가 첫번째이고, 두 번째는 별도의 기간을 설정한다고 하면 내용별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첫 번째 쟁점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음. 한 분만 다른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신 것 같음.

〈○○○ 위원〉

- ○○○ 위원님만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고, ○○○ 위원님도 민감정보에 대해서만 기준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주셨고, 다 같은 의견 주셨음.

〈○○○ 위원〉

- 30년이 아니라 30년과 50년/60년 이런식으로 다르게 적용하자는 의미인지

〈○○○ 위원〉

-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음. 30년이든 50년이든 상관없이 공개하는 것으로 의견을 주신 것 같음.

〈간사〉

- 현재는 개인정보 관련해서 30년 경과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비공개되고 있는데, 30년(혹은 그 이상의 특정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일부 공개를 해도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비공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쟁점임.

〈○○○ 위원〉

- 해외의 비공개상한제도 사례를 보면, 질병등의 정보를 제외한 일반적인 개인정보의 경우 50년 정도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이유로 50년을 제시한 것인지.

〈○○○ 위원〉

- 30년을 적용하는 경우 아직 현직에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조금 공개가 무리가 될 수 있다고 보여져서 그런 경우를 피하면서 가장 짧은 기간을 적용해보고자 50년을 제안하였음

〈○○○ 위원〉

- 특수한 병이나 특별한 가족관계 등 특별히 개인적인 정보가 아니라면 상당 기간 경과후 공개되어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됨

〈○○○ 위원〉

- 50년이라는 기간에 근거가 없으므로, 현행법의 30년 기준을 적용하여 민감정보를 제외한 범위에서 공개 가능하다고 봄

- 최근, 일제강점기 공무원이 해방 후 공무원이 되었는지 전수조사로 연구한 결과가 나온 것도 있음. 공무원 명단, 창씨개명 내역 비교하여 연구에 활용하기도 함. 50년까지 가지 않아도 시대 연구에 활용하는 의미 있으므로 공개 가능하다고 봄.

〈○○○ 위원〉

- 안건에서 제시한 것처럼 정보 내용에 따라 공무수행의 일환인지 개인정보인지 구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고, 기간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음

〈○○○ 위원〉

- 비공개상한제도 관련해서, 현재 공공기록물법 제35조에 의해 생산 30년 경과시 모든 기록물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은 30년 공개 원칙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비공개되고 있어, 법 제36조에 ‘기록물 성격별로 비공개 상한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해놓았음. 안건 내용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인지.

〈간사〉

- 법 제36조에 ‘비공개 상한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 규정이 마련된 것은 없는 상황임. 우리 기관에서 내용적으로 일부를 적용해볼 수 있지 않나 해서 작성하였음

〈○○○ 위원〉

- 원칙은 30년이 경과하면 모두 공개하는 것이 원칙임

〈위원장〉

- 건강 등 민감정보를 제외하고 30년이 경과하면 모두 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해도 될 것인지 (일동 동의)
- 안건2에 대해 민감정보를 제외하고 30년 경과시 모두 공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겠음

〈○○○ 위원〉

- 서울기록원에서 비공개상한제도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서울기록원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위원〉

- 대통령령으로 제정될 필요가 있음

〈○○○ 위원〉

- 장기적으로는 상한제도 도입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차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임. 기록물관리기관 차원에서만 검토할 것이 아니고 개인정보법, 정보공개법 관련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위원장〉

- 심의의결서 작성내용 확인

(○○○위원) 민감한 정보를 제외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어야 함
(간사) 퇴직,면직,휴직 의 근거 조항 자체를 공개하는 것은
가능할지(조항 자체가 ‘질병에 의한 경우’인 경우)

(○○○위원) 공개가능

(○○○위원) 질병 등 민감 정보를 제외한다는 내용 명시적으로 포함 필요

일련 번호	심의안건	검토의견	의결내용
2021- 2-2	공무원의 개인정보 관련 공개범위	○ 30년 경과시 공개가능 - 호봉,급여,수당 정보 - 퇴직,면직,휴직 근거조항(질병, 건강 등 민감한 사생활 정보 제외) - 사직서(일반적인 내용)	수정가결

- 의결서 내용 모두 동의하면 회의 종료 후 메일로 서명 받도록 하겠음

- 이상으로 2021년 제2차 기록물공개심의회를 마치도록 하겠음. 끝.